

대전지방법원 2021. 7. 14 선고 2020나11159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(탈퇴) D 주식회사

원고승계참가인, 피항소인

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서

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, 피항소인

H 주식회사

피고, 항소인 망 B의 소송수계인

1. F

2. I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두환

변 론 종 결 2021. 6. 9.

판 결 선 고 2021. 7. 14.

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. 5. 27. 선고 2018가단7944 판결

주 문

1.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 및 소송수계에 따라,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

나. 망 B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8. 8. 체결된 매매계약을 117,325,6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
다.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8,662,8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라.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2.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
3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, 승 계 참 가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17,325,6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(원고승계참가인이 제1심에서 승계참가하였고, 원고는 피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,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).승계참가취지

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(이하 ‘재승계참가인’이라 한다)에게 117,325,6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재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였다).

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 중 망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(제1심 피고였던 망 B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0. 8. 11. 사망함에 따라 망 B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소송수계를 하였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6. 2. 4. 소외 C 주식회사(이하 'C'라고 한다)에게 98,000,000원을 이자는 연 9.9%, 연체이자는 연 29%, 상환기간은 48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고, 2016. 3. 28.에는 79,000,000원을 이자는 연 9.9%, 연체이자는 연 25%, 상환기간은 48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.

나. C는 2017. 12.부터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, 2018. 8. 8.을 기준으로 한 C의 원고에 대한 잔존 대출원리금 채무는 117,325,625원에 이른다(이하 '이 사건 대출금'이라 한다).

다. C는 2017. 8. 8. 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을 매도하였고, 같은 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라. 원고는 2019. 3. 21.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가항 기재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, 그 무렵 C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.

마.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0. 8. 11. B이 사망하였고, 상속인으로 망 B의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. 피고들은 2020. 11. 11.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느단542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1. 3. 9.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며,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.

바.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2020. 12. 10. 재승계참가인에게 위 가항 기재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, 그 무렵 C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, 17, 19, 20, 34, 35호증, 을 제4, 7, 21, 22, 2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하여 재승계참가인의 참가가 이루어졌으나 원고승계참가인이 소송에서

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와 재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위 청구 모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). 원고승계참가인이 제1심 판결 선고 후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재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원고승계참가인은 더 이상 피고에게 위 채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재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C는 원고로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전전양수한 재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, 재승계참가인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C와 망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채무초과 여부

가)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,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1다32533 판결,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).

나) 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들에다 갑 제9, 18, 21 내지 33호증, 갑 제37호증의 1, 2, 3, 을 제5, 6, 14, 1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 총액이 2,675,990,000원(= 이 사건 부동산 등 부동산 가액 1,728,290,000원 + 화물용 자동차 15대1) 가액 947,700,000원)인 반면, 소극재산으로 G은행에

대한 1,027,000,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총 2,843,000,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여기에 C의 적극재산으로 산정된 화물용 자동차 중 일부에는 단독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,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.

2) 사해행위 성립여부

가)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(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상태였던 C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나) 이에 대해 피고들은, C가 C의 G은행에 대한 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거나 정당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.

을 제2,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C가 G은행에 대한 채무 370,000,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, 앞서 든 증거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은 G은행에 변제한 채무액 370,000,000원을 초과하는 530,000,000원인 점, ② C가 G은행에 위 채무를 변제한 이후 특별히 회사 영업을 통해 채무 변제 자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사정은 찾아 볼 수 없고, 오히려 이듬해 폐업처리된 점, ③ C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대금 중 채무 변제 후 남은 금액들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거나 공동담보로 보관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C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.

다. 선의의 수익자 항변

1) 피고들은 망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했고, C에게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,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

2)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1다37001 판결,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).

3)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망 B과 E이 2017. 8. 29. 협의이혼한 사실은 인정되나, 망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E의 배우자였을 뿐만 아니라, 2017. 6. 23.까지 C의 이사로 재직하는 등 C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망 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망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, 망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C에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,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경위는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,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B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라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1)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,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(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).

2) 갑 제7,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441,000,000원, 채무자 C, 근저당권자 G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.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G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, 망 B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지닌다.

3) 그리고 갑 제18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2018. 11. 12.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533,367,300원인 사실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은행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370,000,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위 533,367,300원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므로,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그 시가에서 G은행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고 남은 163,367,300원(= 533,367,300원 - 370,000,000원)이다.

마. 소결론

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63,367,300원의 한도 내에서 재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117,325,6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망 B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117,325,625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 이 사건이 계속 중인 2020. 8. 11. 망 B이 사망하였고, 2020. 11. 11.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, 위와 같은 망 B의 가액배상채무는 피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.

따라서,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8,662,812원(= 가액배상채무액 117,325,625원 × 법정상속분 비율 1/2, 원미만 버림)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, 재승계참가인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
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
달리하므로,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 및 소송 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
변경한다.

재판장 판사 나경선, 판사 박세진, 판사 강지엽

별지

부동산 목록

1. 충청남도 아산시 대 817㎡

2. 충청남도 아산시 호

[도로명주소] 충청남도 아산시

일반철골구조 기타(판넬)지붕 2층

제2종 근린생활시설(사무소)

1층 91.56㎡

1층 70.66㎡

1층 9.62㎡

2층 147.6㎡

- 끝 -

1) 그 밖에 C 명의로 되어 있으나 지입차량으로 보이는 자동차와 영업용 번호판, 피고 F 또는 망 B 명의 화물용 자동차는 독립적인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으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적극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한다.